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54
------	------

제출일자 : 2022. 11. 10.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수익 발생 시설물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의 해지 근거, 수익금의 처리 및 정산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용 조문 삭제에 따른 정비(안 제26조제3항)
- 나.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정비(안 제31조제2항)
- 다. 위탁시설의 위탁계약 해지 근거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신설)
 -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는 경우
 -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그밖에 계속 위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물 위탁계약 해지 가능

- 라. 위탁시설 수익금 사용 및 처리 규정 신설(안 제37조의2 신설)
 - 1) 수탁자의 수익금 사용 용도를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제한
 - 2) 위탁관계 단절 시 발생하는 잔여 수익금은 구 세입으로 처리
- 마. 위탁시설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 의무 신설(안 제37조의3 신설)
 - 수탁자는 3개월마다 수익금 지출사항 상세 기재한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 10. 4. ~ 2022. 10. 24.): 별도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수익금 잔액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해당 시설물을 재수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수익금 잔액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3(정산보고) ① 수탁자는 3개월마다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위탁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산보고서에 시설물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 ----- ----- ----- --.</p>
<p>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②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고려하여</u> ----- ----- -----.</p>
<p><신 설></p>	<p>제35조의2(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p>

<신 설>

<신 설>

위탁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산보고서에 시설물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비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의 수익 발생 시설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의 해지 근거, 수익금의 처리 및 정산 체계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연 락 처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내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향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향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급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구청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구청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금천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구청장은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 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서울특별시·금천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서울특별시·금천구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서울특별시·금천구·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 차례에 한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로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내역 및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
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